



법무부



박양호 복지정책 2017-04-25 18:42:40

수신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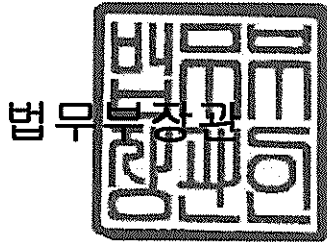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관련 질의 의견회신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2429(2017. 2.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에서 조회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관련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 합니다.

붙임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검사 박양호 심의관 전결 03/02
홍승욱

협조자

시행 법무심의관실-3016 (2017.03.02.) 접수 복지정책과-4693 (2017.3.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운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507 /전송 02-2110-0325 / bayao@moj.go.kr / 비공개(5)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관련 질의 검토

2017. 2. 법무심의관실

① 검토 배경

- '17. 2. 서울특별시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질의

② 질의 내용

- 비영리법인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주무관청이 일부 규정만 불허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검토 의견

-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로서 '새로운 정관'에 대한 변경허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정관 규정 중 일부 규정만을 불허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이 때 주무관청은 '정관 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함
 - 또한, 각 소관부처 법인규칙1)에 의하면, 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첨부) 즉, 정관 전문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음

1)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4.1.8.]

[제7조에서 이동 <2014.1.8.>]

- 즉, 법인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대상은 일부 변경된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경된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정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임

- 한편,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규정된 재단법인 정관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정관변경의 허가는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 법적 성질을 "허가"가 아닌 "인가"로 보고 있음²⁾

※ 행정법상 인가는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 항상 상대방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며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임³⁾

- 결국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인가'로 본다면, '새로운 정관'에서 일부 규정만을 허가하는 것은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정관'에 대한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새로운 정관' 전체에 대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중 일부 규정만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2)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3)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4, 330면.